

문서번호	복지정책과-6168	시 민			
결재일자	2018.3.27.	협치지원관	복지협력팀장	복지정책과장	복지기획관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정연주	오근	배형우	03/27 한영희
방침번호					

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

2018. 3.

복 지 본 부

(복지정책과)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시 민 참 여	●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청책토론회, 설문조사, 시민공모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전 문 가 자 문	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예) 자문위원회 개최, 타당성 검토, T/F 운영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갈 등	●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,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사 회 적 약 배 자 려	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아동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성 별 분 리 통 계	●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인적통계 남·여 구분, 수혜집단의 남·여 구분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일 자 리	●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직·간접 채용, 취업알선, 전문인력양성, 창업지원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선 거 법	●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홍보물 배포, 표창수여, 경품지급, 기부행위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안 전	●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장소·시설물 점검,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타 기 관	● 타 기관 협의·협력(타 자원 활용 등)을 하였습니까? 예) 중앙부처, 타 지자체, 투자·출연기관, 민간단체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홍 보	●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보도자료, 기자 설명회, 현장 설명회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정 책 영 문 화	●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영문 제목·요약, 해외 언론 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바 른 우 리 말	● 불필요한 외국어·와이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 을 사용하였습니까? 예) 스페이스 플랜, 앵커시절, 거버넌스, 인큐베이팅, 매칭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결 재 문 서 공 개	● 공개 여부를 "비공개"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지 속 가 능 성	●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의 보전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
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

서울시민복지기준 1단계 사업성과를 계승하고, 변화된 환경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2단계 복지기준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'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 연구용역'을 실시하고자 함

1 추진배경

추진근거

- 「서울시민복지기준」 설정 방침(시장방침 제399호, '12.12.18)

추진 필요성

- 2018년 서울시민복지기준 1단계 추진 완료시점을 앞두고, 1단계 사업을 보완·발전시켜 2단계 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 제기
 -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성과평가 보고서 및 운영위원과의 시장 간담회시(18.3.23)
- 변화된 사회적 욕구와 서울시 복지수준을 반영하고, 명확한 목표와 시민 체감형의 '복지기준' 재설정 필요
 - 서울시민복지기준은 '고정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발전하고 복지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대적 개념'
- 1단계 성과평가에서 사업중심 운영에 대한 한계, 관리·평가 체계구축 등 개선방향 및 보완 사항이 제기되어 향후 2단계 사업을 위한 연구 필요

2 학술용역 개요

용역명 :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방안 연구

용역기간 : 계약일로부터 3개월

□ **소요예산 : 30,000천원**

□ **계약방법 : 수의계약**

○ **계약근거** 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.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

○ **연구기관 : 서울연구원**

○ **선정사유**

- 서울연구원은 '12년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, 서울시민복지기준 1단계 추진과정 및 기준·지표·사업에 대한 기본 내용을 파악하고 있음.
 - ▷ 2012년 연구내용 : 5대 영역별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, 서울시 복지실태, 자치구 복지재정 격차 해소방안, 시민 및 전문가 의견조사 등
-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추진과 성과평가를 위해 복지실태 조사를 기초자료로 하고 있어, 서울연구원의 '2017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용역'과의 연계성을 고려함.
-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소득·주거·돌봄·건강·교육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분야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, 서울시의 여러 분야 정책연구를 시행했던 서울연구원을 통해 종합적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.

□ **주요 과업내용**

○ **서울시민복지기준 1단계 성과평가 제안 검토**

○ **복지관련 국·내외 지표 검토(문헌검토)**

- 삶의 질과 관련된 국·내외 지표
- 복지성과와 관련된 국·내외 지표

○ **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방안 제안**

-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체계
 - ▷ 기준·지표·세부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
 - ▷ 기존 5대 분야별 운영방식의 개선방안
 - ▷ 시민·행정·전문기관과의 역할분담 방안
-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기준 및 지표(안) 제시

- ▶ 1단계 최저·적정기준 달성도에 따른 기준선 개선안 검토
- ▶ 복지기준별 성과지표 체계 검토
- 서울시민복지기준 관리·평가 방안
 - ▶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
 - ▶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
 - ▶ 복지기준 성과관리를 위한 정기적 데이터 확보 방안
 - ▶ 타 기본계획과의 연계방안

활용계획

-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(2019-2022년) 기준·지표·사업 설정 및 운영 등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

3 자체 학술용역심의 계획

심의회 구성 : 7명

- 내부위원 : 복지정책과장, 희망복지지원과장, 어르신복지과장
- 외부위원 : 허 선(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)
 남기철(서울시 복지재단 대표)
 홍인옥(도시사회연구소 소장)
 주영수(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)

심의회 운영

- 심의방법 : 서면심사
- 의결방법 : 심의위원 2/3이상 참여,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
- 심의내용 : 연구 필요성, 연구방향·내용의 적정성, 용역비 적정성 등

4

행정사항

외부심의위원 수당 지급

- 소요예산 : 400천원 (100천원/인 × 4명)
- 예산과목 : 복지정책과, 행정운영경비, 기본경비, 사무관리비 (201-01)

향후일정

-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: '18. 3월
- 정기 학술용역심의(조직담당관) : '18. 4월
- 학술용역 최종 시행계획 수립 : '18. 4월
- 계약심의위원회 심의(재무과) 및 계약 체결 : '18. 5월
- 용역 시행 : '18. 5 ~ 7월